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제안연월일	2021. 12. .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1. 12. .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지방의회 관련 법규가 일괄 개정(2022. 1. 13. 字 시행)됨에 따라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을 마련하여 구미시의회의 행정사무에 대한 직무상 공백을 최소화하고 책임 사항을 명백하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정대리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지정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규칙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2조

「지방자치법」 제103조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의장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국장이 대리한다.
2. 의회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과장(5급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3. 과장(5급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 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직 무 대 리 명 령 서

1. 피대리자 직명

2. 대 리 자 직명 성 명

3. 대리기간 :

위와 같이 대리를 명함.

년 월 일

구미시의회의장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2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① 사무처장·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